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분석

*전인찬 *최성종 *임정탁 *최재웅

*서울시립대학교

raychani@uos.ac.kr

Analysis of Risk Management for Communication under the Law

*JEON, Inchan *CHOI, Seong Jong *LIM, Jung Tak *CHOI, Jae woong

Bae, Il-Hwan **Lee, Bum-Jin ***Moon, Nam-Mee

*University of Seoul

요약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EBS 방송중단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재난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지금까지 잘 수행되어 왔으나 방송재난관리는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각 방송사 내부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방송사들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방송재난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방송사업자(KBS, MBC, SBS, YTN, MBN)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방송재난 대비, 방송재난 보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와 관련된 법 조항을 분석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의 경우는 재난방송 의무는 없으나 재난방송협의회 참가를 통하여 CBS 등과 같은 재난방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추어 새로 제정된 법령으로,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방송과 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2011년 8월 19일에 시행되었다. 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방송의 개념과 통신의 개념을 합친 방송통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여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

기본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기통신기본법의 기존 제5장의2 ‘통신재난의 관리’가 기본법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로 이관되며 기존 통신재난관리가 방송통신재난관리로 확대되었고, 방송법의 재난방송이 제6장에 포함된 점이다.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 발생 시, EBS 방송센터가 침수되어 정규 방송이 중단되었다. EBS에서는 약 6시간만에 모든 방송을 정상화하였으나 전기실, 스튜디오의 복구에는 시간이 걸려 본편성을 타 방송사의 스튜디오를 빌려서 제작하였다[1]. 이와 같은 방송중단을 계기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관련 법령을 점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법 시행으로 새로 발생한 방송통신재난관리와 방송통신 융합에 맞춘 통신사업자의 재난방송 필요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 방송재난관리

나. 방송재난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재난 또는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통신재난’으로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법에서는 이에 방송을 추가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또는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방송통신재난’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통신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려오던 통신재난의 업무가 있으나,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재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방송재난을 통신재난에 그대로 대입하면 ‘주요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또는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되나 이를 그대로 방송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송서비스의 문제와 통신서비스의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는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통신은 경찰, 구급차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금융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에 방송서비스의 중단은 가벼운 불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인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서비스의 중단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통신서비스는 언제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방송서비스는 재난 시에만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송재난을 재난방송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송재난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서비스(재난방송)에 물리적, 기

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주요방송사업자의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는 방송통신재난관리의 대상이 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시행령 제2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2호는 전국대상 지상파 텔레비전사업자를 의미하고 현재 KBS, MBC, SBS 3사이고, 제3호는 보도전문편성사업자인 YTN과 MBN이다.

5개 방송사(KBS, MBC, SBS, YTN, MBN, 이하 주요방송사업자)는 방송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방송재난 대비

기본법 제37조(방송통신재난의 대비)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통합 운영을 위한 방송설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 DB화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라. 방송재난의 보고

기본법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는 방송통신재난 발생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방송사업자들은 방송재난 현황, 원인, 응급조치내용, 복구대책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기간은 방송재난 발생부터 종료까지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기본법 제48조(과태료)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마.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며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4. 재난방송과 통신사업자

현재 통신사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통신재난관리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의 주요 의무가 방송사업자로 확대되었으나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의무는 통신사업자로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방송의 공익성이 통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CBS 재난문자방송과 같이 통신망을 이용한 재난방송을 이미 시행하여 통신사업자도 재난방송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제9조에서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동법 시행령 제10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성원으로 현재 KBS, MBC, SBS, YTN, MBN의 재난방송 총괄 담당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통신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난방송 발전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통신사업자 역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변화한 방송통신재난관리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기본법 시행에 따라 주요방송사업자들에게 방송재난관리 의무가 발생하였다. 방송재난의 정의에 대해서는 모든 방송서비스가 아닌 재난방송 서비스에 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난방송협의회에 참여하여 재난방송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EBS 방송중단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본 논문에서 주장한 방송재난의 정의를 재난방송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감사의 말: 이 연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2011, “뉴미디어를 활용한 재난방송 전달 체계 연구”)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1] “우면산 산사태 방송 차질, EBS·현대HCN 정상화”, 머니투데이, 2011.8.1